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정의(안 제2조)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으로 정의함.

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함.

라.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자문단, 기획단 설치 등(안 제8조~제11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을 위해 범부처협의회의를 두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범부처협의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4.6.17~'24.7.2)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제9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행·재정적 사안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포함)이 된다.

제10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과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기념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연 락 처	(02) 3778 - 3592